

2021. 12. 22. (수) 실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 일 러 두 기 〉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위탁선거규칙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규칙별지 제1호서식
-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정관
-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규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위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입후보예정자

2.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위탁선거법」 및 「위탁선거규칙」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 등은 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후보자 등록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전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하고, 선거기간 중(2021.12.2.~2021.12.22.)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함.

〈 문 의 처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해당 선거관련 법규 및 정관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제보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등록, 투개표관리 : 중앙선거관위 선거2과 ☎ 02-3294-8343, FAX 0505-058-1135

❖ 위반행위 신고·제보

○ 충남선거관위 지도과 ☎ 041-406-2055, FAX 0505-058-3205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내 상주전담반 ☎ 042-720-2042, 2043

※ 선거사무안내책자 및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통합자료실 > 선거자료 > 각종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목 차

• • I . 제33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개요 • •

1. 선거일 및 선거기간	3
2. 후보자등록	3
3. 선거운동	3
4. 투표 및 개표	3
5. 당선인	4

• • II . 선거인명부 • •

1. 선거인명부 작성	7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7

• • III . 후보자등록 • •

1. 후보자등록 요건	12
2. 후보자등록 신청	15
3.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15
4. 등록무효	18
5. 후보자사퇴 신고	19

• • IV. 선거운동 • •

1. 선거운동의 정의	23
2.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23
3. 주요 제한·금지행위	24

• • V. 투표 및 개표참관 • •

1.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29
2.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30

• • VI. 당선인 • •

1. 당선인 결정	35
2. 당선증 전달	35

• • 부 록 • •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39
②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	41
③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41
④ 선거사무일정	60

I

제33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개요

주요 신고·신청 등 참고사항

일 정	실 시 사 항	장 소
11. 23.(화) ~ 11. 25.(목)	회장 후보자 추천서 교부	중앙선거위 (선거2과)
11. 29.(월)까지 (토·일, 공휴일은 제외)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사전검토	
11. 30.(화) ~ 12. 1.(수) 매일 09:00 ~ 18:00	후보자등록신청	중앙선거위 (407호)
12. 1.(수) 18:00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첨	
12. 20.(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중앙선거위 (선거2과)
12. 21.(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I.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개요

1 선거일 및 선거기간

- 선거일 : 2021. 12. 22.(수)
- 선거기간 : 2021. 12. 2.(목) ~ 2021. 12. 22.(수) [21일간]
- 임 기 : 4년

2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21. 11. 30.(화) ~ 12. 1.(수) [매일 09:00~18:00]
- 등록장소 : 중앙선관위(407호)
- 후보자추천서 교부 : 2021. 11. 23.(화) ~ 11. 25.(목)

3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2021. 12. 2.(목) ~ 2021. 12. 21.(화) [20일간]
- 선거운동주체 : 후보자
- 선거운동의 정의 :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운동 방법 :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컴퓨터 통신(전자우편 포함),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4 투표 및 개표

- 투표일시 : 2021. 12. 22.(수) 중앙회에서 결정한 투표개시 시각부터 90분간
- 개표일시 : 투표종료 후 즉시
- 투표방법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현장투표
- 투표 및 개표장소 : 신용협동조합 중앙연수원 다목적홀 (대전 유성구)

● 투표 및 개표 절차

▶ 투표절차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선거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명부단말기를 이용하여 선거인명부와 대조) ➡ 투표카드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투표카드를 투표기와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인식 후 투표) ➡ 카드 수거함 투입 ➡ 퇴소

▶ 개표절차

온라인투표시스템상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5 당선인

● 당선인 결정

▶ 기 준 :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

※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

● 당선증 전달

▶ 시 기 : 2021. 12. 23.(목) [예정]

▶ 장 소 : 중앙선관위 4층 회의실

II

선거인명부

Ⅱ.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가. 등재자격 : 회장 및 회원의 이사장(조합의 대표) (874명)

나. 작성권자 : 신협중앙회

다. 작성기간 : 2021. 11. 23.(화) ~ 11. 25.(목) [3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 : 2021. 12. 13.(월)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선거인명부 열람

- 1) 열람권자 : 선거권자
- 2) 열람기간 : 2021. 11. 26.(금) ~ 12. 12.(일)
- 3) 열람장소 : 신협중앙회 사무실

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1) 신청권자 : 선거인
- 2) 신청처 :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3)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 4) 신청사유 : 선거인명부가 사실과 상이할 때
- 5) 신청방법 : 서면
- 6) 심사결정 :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수정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신협중앙회(☎ 042-720-1223)에 문의

III

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 안내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후보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지 못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로 되는 등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후보자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기 간	장 소
후보자등록신청서류	2021. 11. 30.(화)까지 (토·일, 공휴일은 제외)	중앙선관위 (선거2과)

개 요

▣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21. 11. 30.(화) ~ 12. 1.(수) [매일 09:00~18:00]
 - 등록장소 : 중앙선관위(407호)
- ※ 후보자추천서 검인·교부 신청기간 : 2021. 11. 23.(화) ~ 2021. 11. 25.(목)

▣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등

서 류 명	수 량	근 거	비 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위탁선거규칙 § 9①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탁선거규칙 § 9①	필수
확인서	1부	규약 § 19	필수
회장 입후보추천서	해당부수	규약 § 18①, § 19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협의 결정	필수
기탁금(5천만원)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규약 § 18의2①	필수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1부	규약 § 19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규약 § 19	
인영신고서	2부	위탁선거규칙 § 10	
이력서	1부	규약 § 19	
사진(칼라 5cm×7cm)	2매	규약 § 19	전자파일 별도제출

※ 비고란에 “필수” 표시가 되어 있는 제출대상 서류의 미제출시 「위탁선거법」 제19조(등록무효) 또는 협의결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됨.

Ⅲ.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가. 적극적 요건

- 1)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함. (정관§31①)
- 2) 회원대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함. (규약§18①)

나. 소극적 요건

- 1) 법적 결격사유 (신용협동조합법§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4)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11)까지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①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③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정관 등 결격사유 (정관 §35, §35의2)

- (1)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를 받고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관리유예조치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조치를 받고 있는 회원의 임원
- (3) 정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규약 제17조에서 정한 피선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회원 또는 중앙회의 직원인 자

(6)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 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및 그 중앙회
-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③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④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⑥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사업자·보험모집인·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

3) 피선거권 제한 (규약 §17)

- (1) 후보자등록개시일(2021. 11. 30.) 현재 회원의 조합원 자격을 3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다만, 설립(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를 포함)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제외]
- (2) 후보자등록개시일(2021. 11. 30.) 현재 과년도 중앙회비를 체납한 회원의 조합원
- (3) 후보자등록개시일(2021. 11. 30.) 현재 중앙회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거나 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3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회원의 조합원
- (4) 후보자등록개시일(2021. 11. 30.) 현재 회원에 대한 채무를 3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
- (5) 후보자등록개시일 현재(2021. 11. 30.)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및 금융 질서문란정보에 등재된 자(다만 공공기록정보는 제외)

4) 피선거권 자격산정 기준 : 피선거권 자격산정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일(2021. 12. 22.) 현재로 산정

2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21. 11. 30.(화) ~ 12. 1(수)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으로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관위(선거2과)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록장소 : 중앙선관위(407호,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라. 등록신청서 접수순서 : 등록장소 도착순서에 따라 접수하되, 등록신청 개시시각 (오전 9시) 전에 도착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추천순위 추천 후 그 추천 순위에 따라 접수 순위 결정

마. 등록신청서류 등 목록 및 준비절차

가) 등록신청서류 등 목록

서류명	수량	비고
○ 후보자등록신청서 [필수]	1부	[별지 5] 서식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1부	구·시·읍·면·동장 발행
▪ 확인서 [필수]	1부	[별지 7] 서식, 신탁중앙회장 발행
▪ 회장 입후보추천서 [필수]	해당부수	[별지 8] 서식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	1부	[별지 9] 서식
▪ 기탁금(5천만원)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1부	
▪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필수]	1부	[별지 10] 서식
○ 기타 관리상 필요서류		
▪ 인영신고서	2부	[별지 11]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구·시·읍·면·동장 발행
▪ 이력서	1부	[별지 12] 서식
▪ 사진		칼라 5cm×7cm(전자파일 별도 제출)

※ 기관 발급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확인서는 후보자등록개시일 현재로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나) 등록신청서류 준비절차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발급 방법 : 구·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확인서

- 발급 방법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신청

(3) 회장 입후보추천서

- 교부신청 기간 : 2021. 11. 23.(화) ~ 11. 25.(목) 매일 09:00~18:00
- 교부신청 장소 : 중앙선관위(선거2과)
- 교부신청 서식 : [별지 1] 서식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별지 2] 제출
- 교부수량 : 신청자 1인당 30매(1매당 1인의 추천)

※ 유의사항 ※

- 유효한 추천권자는 추천일 현재 이사장으로 함.
-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장의 추천을 받음.
- 이사장은 회장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추천 가능함.
- 이사장 성명, 생년월일, 날인 또는 서명은 추천인이 직접 기재 및 서명하여야 함.
-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날인 또는 서명”란에 추천인의 손도장을 찍으면 무효로 됨.
- 본 추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30매씩 교부함 (추천서 1매에는 1명의 추천만을 받아야 함).
- 다음의 추천서는 무효로 처리함.
 -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서로 추천을 받은 경우(복사 또는 임의 제작사용 불가)
 - (2) 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거나 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3) 추천권자 성명과 날인 또는 서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 (4) 추천서 1매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최초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인의 추천

(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작성 방법 : 후보자가 [별지 9]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한 인영으로 날인

(5)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 작성 방법 : 후보자가 [별지 10] 서식에 따라 작성

(6) 인영신고서 2부

- 작성 방법 : [별지 11] 서식에 따라 각종 신고·신청·제출 등 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날인

(7) 이력서

- 작성 방법 : [별지 12] 서식에 따라 작성

(8) 사진(5cm×7cm) 2매

-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칼라 사진
- 전자파일 별도제출(해상도 150×200 픽셀 이상), 전자메일(khj117600@korea.kr)로 송부

바. 기탁금

가) 납부금액 : 5천만원

나) 납부시기 : 후보자 등록 신청시까지

다) 납부방법 : 중앙위원회가 개설한 기탁금 계좌에 후보자 명의로 무통장(이체)입금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납부할 수 있음

기탁금 납부계좌 : 농협 301-0300-6819-81 (예금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반환 및 귀속

▶ 기탁금의 반환

- 반환요건 : 당선, 사망,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
 - 전액 반환 :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자
 - 50% 반환 :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자
- 반환기한 : 2022. 1. 21.(금) 이내(선거일 후 30일 이내)
- 반환방법 : 후보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기탁금의 신탁중앙회 귀속

- 귀속사유 : 사퇴, 등록무효,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 득표

사. 유의사항 : 필수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후보자등록기간 내에 이를 보정·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아. 등록신청서류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① 참조

3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가. 시 기 : 2021. 12. 1.(수) 18:00

나. 장 소 : 중앙선관위(407호)

다. 참 석 : 후보자 또는 대리인

라. 내 용

- 1)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천
- 2)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

▶ 방 법

-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별지 13] 서식의 위임장 제출)의 추천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함.
※ 추천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사람이 추천
-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추천순위를 추천한 후, 그 추천순위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을 위한 추천을 함.

▶ 기호 표기 :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기

4 등록무효

가. 등록무효 사유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 ② 신용협동조합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 ③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중 필수 구비서류(신협중앙회에서 결정한 서류를 말함)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회장입후보추천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기탁금(기탁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나. 등록무효 결정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무효사유를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지정기간까지 소명이 없거나 소명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5 후보자사퇴 신고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고처 : 중앙선관위(선거2과)

다. 신고방법 : 후보자 자신이 직접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별지 14]으로 신고

IV

선 거 운 동

IV.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가. 선거운동 : 중앙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행위
-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3) 통상적인 업무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가. 선거운동주체 : 후보자

나. 선거운동기간 : 2021. 12. 2.(목) ~ 12. 21.(화) [20일간]

다. 선거운동방법

- 1) 선전벽보
- 2) 선거공보
-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 4)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한 지지호소
- 5) 컴퓨터 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호소
- 6)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라. 선거운동 관리 주체 : 신협중앙회

※ 선전벽보, 선거공보 작성 방법 및 후보자의 합동연설회 등에 관한 사항은 신협중앙회에 문의

3 주요 제한·금지행위

가. 회원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신용협동조합법 § 27의2①, § 99③)

- 1) 주 체 : 누구든지
- 2) 제한시기 : 상시제한
- 3) 주관적 목적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중앙회장으로 당선되게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4) 금지내용

- 가)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나)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가)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 다) 가) 또는 나)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5)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기부·매수행위 금지(규약 § 7조②)

- 1) 주 체 : 누구든지
- 2) 제한기간 : 상시제한
- 3) 주관적 목적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중앙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

4) 금지내용

- 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나)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다) 위 가)또는 나)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다. 호별방문의 등의 제한(규약 § 7조③)

- 1) 주 체 : 중앙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
- 2) 제한기간 : 상시제한
- 3) 주관적 목적 : 선거운동을 위하여
- 4) 금지내용

- 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
- 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라. 허위사실유포 · 비방 금지(규약 § 7조④)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금지기간 : 상시제한
- 3) 주관적 요건 : 선거와 관련하여
- 4) 금지행위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마. 직원 등 선거운동 금지(규약 § 7조⑧)

선거관리위원, 회원의 직원, 중앙회의 직원은 선거운동 금지

바.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금지(위탁선거법 § 65조)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가)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의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나)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다)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4) 벌 칙 :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 및 개표참관

V. 투표 및 개표참관

1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2021. 12. 20.(월)까지

※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봄.

다. 신고처 : 중앙선관위(선거2과)

라. 신고인원 : 후보자마다 2명 이내

마. 신고서식 : [별지 16]

바. 투표참관인 자격 : 선거인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사. 투표참관인 지정

1)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함.

2)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함.

아.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자. 참관요령

1) 투표소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며, 투표소안에서는 중앙선관위에서 발급한 출입자 표지를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음.

2) 투표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3)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4)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2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2021. 12. 21.(화)까지

※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개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봄.

다. 신고처 : 중앙선관위(선거2과)

라. 신고인원 : 후보자마다 2명 이내

마. 신고서식 : [별지 16]

바. 개표참관인 자격 : 투표참관인 자격과 동일함.

사. 개표참관인 지정 : 투표참관인 지정과 동일함.

아.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자. 투표·개표참관인 겸임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 투표참관인 신고시 신고서의 비고칸에 “개표참관인 겸임”으로 적음.

차. 참관요령

- 1) 개표소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표소안에서는 중앙선관위에서 발급한 출입자 표지를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음.
- 2) 개표참관인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 3)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표책임사무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개표책임사무원은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4) 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VI

당선인

Ⅵ. 당선인

1 당선인 결정

가. 개표결과 통지

- 1) 주 체 : 중앙선관위
- 2) 방 법 : 개표 종료 후 즉시 신협중앙회에 통지

나. 당선인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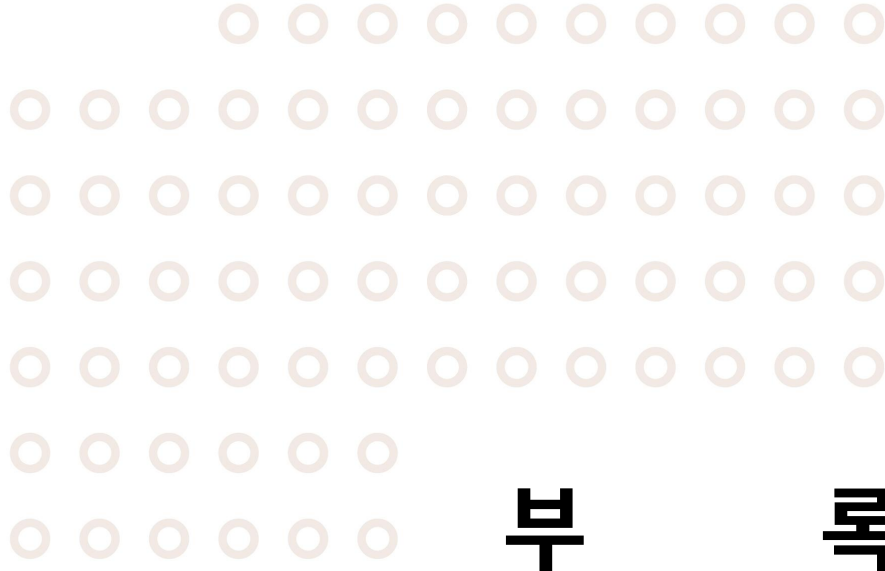
- 1) 주 체 : 신협중앙회
- 2) 기 준
 -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
 -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2 당선증 전달

가. 일 시 : 2021. 12. 23.(목) [예정]

나. 장 소 : 중앙선관위 4층 회의실

다. 내 용 : 당선증 전달, 기념촬영, 환담 등



-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②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
- ③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④ 선거사무일정

1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성 명 : 홍길동 (한자 : 洪吉童)
2. 주민등록번호 : 5□0831-1234567
3.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구 □□로 ◎◎
4. 주 소 : 경기도 ○○시 ○○구 △△로 □□
[전화번호 :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 010-1234-5678]
5. 직 업 : ○○신협 이사장
6.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
7. 경 력 : (전) ○○신협 이사장
(현) ○○신협 이사장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확인서 1부
- (3) 회장입후보추천서 1부
- (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5) 기탁금(5천만원) 및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 (6)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1부
- (7) 인영신고서 2부
- (8) 주민등록등본 1부
- (9) 이력서 1부
- (10) 사진(칼라 5cm×7cm) 2매(전자파일 별도 제출)

나.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1. 성 명”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그대로 온라인투표용지에 현출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
“2. 주민등록번호”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3. 등록기준지”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4. 주 소”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후보자 본인의 주소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함. ※ ‘도로명 주소’를 기재
“5. 직 업”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6. 학 력”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함. ※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7. 경 력”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만을 기재함. ※ 현직의 경우 “현”, 전직의 경우 “전”으로 표시함.
“8. 신 청 인”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영신고서 상의 도장을 날인해야 함.

②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

•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 •

1.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성명·전화번호·이메일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신용협동조합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전화, 문자)	신용협동조합법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전자우편)	제27조의2	이메일주소

2.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르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3.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기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참조

③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후보자 추천서 검인·교부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 검인·교부신청 위임장
3. 후보자 추천서 분실확인서
4. 후보자등록신청 도착순위 추첨 위임장

5. 후보자 등록 신청서
6.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증
7. 확인서
8. 회장 입 후보 추천서
9.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0.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11. 인영 신고서
12. 이력서
13.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14. 후보자 사퇴 신고서
15. 후보자 사퇴신고서 접수증
16. (투표)·(개표)참관인 신고서

후보자 추천서 검인·교부신청서

1. 선 거 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2. 입후보예정자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주 소 :

(전화번호 :)

3. 검인·교부 신청매수 : 매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후보자 추천서의 검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입후보예정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 추천서 검인·교부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자>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전화번호 :)

위의 사람에게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추천서 검인·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입후보예정자

인

별지 : 위임받는 자 신분증(사본) 1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등록신청 도착순위 추첨 위임장

피 위 임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사람에게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 도착순위 추첨권한을 위임함.

2021년 월 일

입후보예정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성 명 : (한자 :)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기준지 :
4. 주 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
6. 학 력 :
7. 경 력 :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확인서 1부
- (3) 회장입후보추천서 1부
- (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5) 기탁금(5천만원) 및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 (6)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1부
- (7) 인영신고서 2부
- (8) 주민등록등본 1부
- (9) 이력서 1부
- (10) 사진(칼라 5cm×7cm) 2매(전자파일 별도 제출)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
2.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함.
 3.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중 1개를 기재함.
 4.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만을 기재함.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증

결재	담	당	계	장	선거2과장

후보자등록신청서류접수증 원부	
선 거 명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시	2021. . . : 지인
후보자명	
제 출 서 류	
1. 후보자등록신청서	부
2. 가족관계증명서	부
3. 확인서	부
4. 회장 입후보추천서	부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
6. 기탁금(5천만원)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7.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부
8. 인영신고서	부
9. 주민등록등본	부
10. 이력서	부
11. 사진(전자파일 별도제출)	매

후보자등록신청서류접수증	
선 거 명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시	2021. . . :
후보자명	
제 출 서 류	
1. 후보자등록신청서	부
2. 가족관계증명서	부
3. 확인서	부
4. 회장 입후보추천서	부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
6. 기탁금(5천만원)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7.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부
8. 인영신고서	부
9. 주민등록등본	부
10. 이력서	부
11. 사진(전자파일 별도제출)	매
<p>상기와 같이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정히 접수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p>	
취 급 자	(인)

확 인 서

1. 후보자 성명 :

2. 소속 조합 :

상기 후보자에 대한 소속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회비 및 대출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함.

- 아 래 -

가. 출자금(증좌액 포함)

2021년 11월 30일 현재

출 자 금	납 입 출 자 금	잔 액	비 고

나. 회 비

년 월 일 현재

년 도	부 과 액	납 입 액	잔 액	비 고

다. 대 출

년 월 일 현재

대출내용	대 출 일	대 출 금	상 환 금	잔 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비 고

2021년 월 일

확인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회 장 입 후 보 추 천 서



- 1. 선 거 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 2. 추천받는 자
 - 가. 성 명 :
 - 나. 생년월일 :
 - 다. 주 소 :
 - 라. 소속조합 :

위 사람을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소속지역본부명	조합명	이사장 성명	이사장 생년월일	날인 또는 서명

- 주 : 1. 유효한 추천권자는 추천일 현재 이사장으로 함.
 2.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장 추천을 받아야 함.
 3. 이사장 성명, 생년월일, 날인 또는 서명은 추천하는 이사장이 직접 기재 및 서명함.
 4.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날인 또는 서명"란에 추천하는 사람의 손도장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로 됨.
 5. 본 추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30매씩 교부함(추천서 1매에는 1명의 추천만을 받아야 함).
 6. 다음의 추천서는 무효로 처리함.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서로 추천을 받은 경우(복사 또는 임의 제작·사용 불가)
 (2) 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거나 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3) 추천권자 성명과 날인 또는 서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4) 추천서 1매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최초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인의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2021.12.22.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임원자격 및 피선거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 조회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개인신용정보 : 개인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등 ▶ 기타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5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7조 등의 임원자격 및 피선거권 제한사항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임원 임기 종료시까지 수집·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는 임원선거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임원선거 입후보 및 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임원선거 입후보 및 임원 재임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p>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개인신용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기타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인 영 신 고 서

후 보 자 ○ ○ ○	인 영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1 년 월 일

후보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이 력 서

성 명	(한자 :)	사 진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기 간		학 력 사 항	비 고
부 터	까 지		

기 간		경 력 사 항	비 고
부 터	까 지		

※ 학력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

※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미기재'로 기재 가능

2021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

성 명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피 위 임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사람에게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위임함.

2021년 월 일

후 보 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인영신고서 상의 인영을 날인함.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선 거 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2. 후보자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퇴 사 유 :

본인은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1년 월 일

후 보 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인영신고서 상의 인영을 날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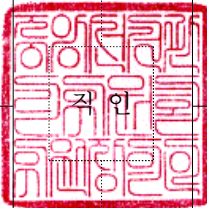
후보자 사퇴신고서 접수증

후보자 사퇴신고서 접수증 원부

후보자 사퇴신고서 접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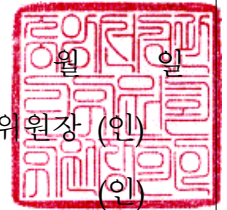
결	담	당	계	장	선거2과장
재					

선 거 명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접수일시	
후보자명	
접 수 사 항	
사퇴신고서 1부	



취 급 자 인

선 거 명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후보자명	
(예비) 후보자명	
접 수 사 항	
사퇴신고서 1부	
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취급자 (인)	



(투표)·(개표)참관인 (선임) · (교체)신고서

1. 후보자성명 :

2. 참 관 인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비고

2021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개표) 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1년 월 일

후 보 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구분" 칸에는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을 기재함.

2. 교체신고시에는 "비고"칸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기재함.

4 선거사무일정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주요사무일정

[선거일 12. 22.(수), 선거기간 21일]

일 자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조문
'21. 10. 15.(금)	선거관리 위탁신청	중앙회	임기만료일부터 90일까지	법§8
'21. 11. 19.(금) ~'22. 2. 20.(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중앙회	임원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설치, 선거종료일 후 60일까지 존속	규약§8
'21. 11. 22.(월) 까지	선거일 공고 *공고사항 :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선거일 및 장소, 선거인의 자격, 피선거권자의 자격, 후보등록기간, 등록접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	선관위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법§14⑥ 규약§6
'21. 11. 22.(월) ~ '22. 1. 1.(토)	투표관리관 위촉·운영	선관위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규칙§17①
11.23.(화) ~ 11.25.(목)	선거인명부작성	중앙회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3일내	규약§14
11.23.(화) ~ 11.25.(목)	회장 후보자 추천서 교부	선관위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3일간	규약§18
11.26.(금) ~ 12 12(일)	선거인명부 열람	중앙회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규약§14
11.30.(화) ~ 12 1.(수)	후보자 등록	선관위	선거일공고일로부터 10일내	법§18 규약§18
12 1.(수)	투표용지계재순위 추첨	선관위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2②
12 2.(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13
12 12(일) 까지	투표소 공고	선관위	선거일전 10일까지	규칙§18①
12 13.(월)	선거인명부확정	중앙회	선거일전 9일	규약§16
12 15.(수) 까지	선거공보 발송	중앙회	선거일전 7일까지	규약§28
12 17.(금) 까지	개표소 공고	선관위	선거일전 5일까지	규칙§25①②
12 20.(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12 21.(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12 22.(수)	투·개표	선관위		법§44①, §47
12 24(금)	당선증 교부식	선관위		규칙§33
'22 1. 21.(금)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관위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44②

신협중앙회장선거 세부일정

[선거일 12. 22.(수), 선거기간 21일]

일 자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조문
'21. 10. 15.(금)	선거관리 위탁신청	중앙회	임기만료일부터 90일까지	법§8
10. 31.(일)까지	후보자등록 시 신청 서류목록 제출	중앙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법§18②2.4 규칙§9②
'21. 11. 19.(금) ~'22. 2. 20.(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중앙회	임원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설치, 선거종료일 후 60일까지 존속	규약§8
상 시	회원 호별방문 및 모임금지	후보자등	상시	규약§7
'21. 11. 22.(월) 까지	선거일 공고 *공고사항 :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선거일 및 장소, 선거인의 자격, 피선거권자의 자격, 후보등록기간, 등록접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	선관위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법§14⑥ 규약§6
'21. 11. 22.(월) ~ '22. 1. 1.(토)	투표관리관 위촉·운영	선관위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규칙§17①
11.23(화) ~ 11.25(목)	선거인명부작성	중앙회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규약§14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및 전산 자료 송부	중앙회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	법§15② 규칙§7③
11.23(화) ~ 11.25(목)	회장 후보자 추천서 교부	선관위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3일간	규약§18
11.26(금) ~ 12.12(일)	선거인명부 열람	중앙회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전일까지	법§16①
11.30(화) ~ 12 1.(수)	후보자 등록	선관위	선거일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	법§18 규약§18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입후보예정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법§18②
	기타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서류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12 1.(수)	투표용지계재순위 추첨	선관위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2②
	후보자 사퇴신고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20 규칙§11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 무효에 관한 공고	선관위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법§21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신협에>	선관위		법§19②

일 자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조문
12 2(목)	피선거권 조사	선관위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법§18④⑤ 규칙§9⑤
12 2(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13
12 12(일) 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관위	선거일전 10일까지	규칙§18①
12 13(월)	선거인명부확정	중앙회	선거일전 9일	규약§16
12 14(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등 발견시 통보	중앙회	사유 발견시마다	규칙§8①
12 15(수) 까지	선거공보 발송	중앙회	선거일전 7일까지	규약§28
12 17(금) 까지	개표소 공고	선관위	선거일전 5일까지	규칙§25①②
12 20(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후보자	신고 후 언제든지	공선법 §161⑤ 공선법 규칙 §88①
12 21(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12 21(화)까지	투·개표소 설비	선관위		규칙§18②, §25③
12 22(수)	투·개표	선관위		법§44①, §47
	투·개표 및 선거록 작성	선관위		법§49③④ 규칙§29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중앙회	개표종료 후	규약§37
12 24(금)	당선증 교부식	선관위		규칙§33
'22 1. 21(금)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관위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44②